

별첨 4

폭염시기 공사중지·연장 등 제도

□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또는 최소화

구분	체감온도	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(3대수칙 이행 가이드)
관심	31℃이상	물·그늘·휴식 제공 /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(※ 단계별 공통사항)
주의	33℃이상	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,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 단축(또는 근무시간 조정)
경고	35℃이상	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,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(불가피한 경우 제외)
위험	38℃이상	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,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(재난 등 긴급시 제외)

□ 산업안전보건법

- 건설공사도급인이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,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
*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

□ 기획재정부(계약예규)

-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,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 조정
-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
* (계약예규) 제23조(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, 제25조(지체상금), 제26조(계약기간의 연장),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(공사의 일시정지),

□ 국토교통부(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)

- 수급인은 폭염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, 도급인은 즉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, 연장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됨
*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제17조(공사기간의 연장)

□ 행정안전부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)

-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정지,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
-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야 할 경우 휴일·야간작업 지시, 발주기간이 일시정지하거나, 공사기간 연장 또는 작업시간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
* (예규) 제13장제5절 6(휴일작업과 야간작업) / 제13장제7절 4(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 / 제13장제8절(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·해지)